

회의자료 94-07

입양특례법 개정시안을 위한
간담회 결과보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입양특례법 개정시안을 위한 간담회 결과보고

일 시: 1994. 5. 23(월). 14:00 - 17:30

장 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층 소회의실

참석자: 총 10명(원외 6명, 원내 4명)

이상석 보건사회부 아동복지과장
주정미 보건사회부 아동복지사무관
박영옥 홀트아동복지회 국내입양부장
김도미니카 성가정입양원 원장
김주수 전 연세대 법학과 교수
배태순 경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홍문식 인구연구부장
정기원 가족정책실장
안현애 연구원
오미영 임시주임연구원

입양특례법 개정시안을 위한 간담회 결과보고

정기원 - 회의자료설명.

- 지난번 간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개정시안 기본방향을 설정함.
- 오늘 간담회 토론내용을 중심으로 입양특례법 개정시안이 정리될 것임으로 이번 간담회가 마지막임.
- 개정시안 설명: 6장 40조로 구성.
- 회의진행발언: 각 조항마다 설명하면서 의견받는 식으로 진행.

홍문식 - 입양전문기관과 지정기관의 정의가 필요한가? 뒤의 17조 1항과 중복됨.

주정미 - 입양기관의 정의: 입양전문기관은 보사부 인가, 입양지정기관은 시, 도지사 허가에 의함.
- '아동과 요보호아동의 정의는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을 말한다'로 개정시안 제2조 1, 2항을 개정할 것.

김주수 - 개정시안 4조 2항 2호의 '호주의 직계비속' 삭제; 91년 시행된 민법개정에 의하여 필요 없음.

배태순 - 개정시안 5조 2항의 45세 나이 차이는 너무 작음. 또한, 집단보호시설보다 편부모가 나으므로 편부모 입양도 가능해야 함.

김주수 - '양친'보다는 '양부모'가 이해가 명확함. 용어통일 해야.

김도미니카 - 개정시안 5조 2항의 '양친'을 '양친될 자의 일방'으로 고침이 더 융통적.

이상석 - 개정시안 6조 '...입양기관을 통하여야 한다'로 고칠것.

김주수 - 개정시안 7조 2항은 민법과 같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나음.

홍문식 - 개정시안 7조 1항을 5조 1항으로 옮길것.

김주수 - 개정시안 10조 2, 3항은 허위사실의 기재이므로, 문제의 소지가 많음. 또한, 10조는 호적법 규정이므로, 호적법에서 다루어야 함. '입양특례법에 의한 출생신고를 할 때는 출생신고서가 필요없는 것'으로 호적법에 새로 규정해야 하고, 개정시안에서는 '호적법에 의한다'고 할것.

정기원 - 이는 호적상에는 입양된 사실이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함. 단지, 파양시에만 원적을 봐서 알수 있도록. 기준의 호적은 제적부에 보관.

김주수 - 입양특례법에 호적법의 절차를 둘 수 없다. 10조 자체가 호적법에 가야함 ⇒ 10조 삭제.

- 개정시안 13조에 입양시 친족과의 관계가 소멸됨을 삽입할것. <친족관계 종결>로

표제하여 '양자와 친모 및 그 혈족관계를 종료한다'로 규정할것.

- 개정시안 16조 2항에 '파양에 의하여 그 아동의 원래 친족관계는 복귀된다'를 삽입할 것.
- 개정시안 15조 1항 2호 "계속하기 중대한 사유"라는 파양청구 범위는 너무 넓다 ⇒ 2호 삭제.

주정미 - 파양사유는 아동복지법 18조에 해당되는 사항과 관련이 많으므로 아동복지법 18조 참조가 바람직.

- 16:15 5분 휴식 -

배태순 - 입양상담기관의 허가는 보사부장관의 허가로 일원화함을 건의.

이상석 - 기존안이 나음.

주정미 - 개정시안 18조 2항의 교육훈련의 의무주체가 입양기관장도 포함 되어야 함.

김주수 - 행정지도를 통해 이루어 질수 있음.

박영옥 - 개정시안 22조(전원) 1항에서 행정구역의 문제 제기: 자기기관의 아동도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들어가지 못함. 이번 개정에서 이 문제점이 반드시 고쳐져야 함.

김도미니카 - 행정구역에 상관없이 입양되어 지지않은 아동이 수용되어 쳐야함.

이상석 - 개정시안 23조 1항에 '국가정책상 필요한 경우에 보사부 장관이 국외입양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허가거부 근거조항 혹은 허가제한조항을 두어야 함.

배태순 - 개정시안 24조 '...하여야 한다' 또는 '필요하다면, 하여야 한다'로 하여 입양서비스에 대한 국가개입의지를 분명히 해야 함.
- 개정시안 33조의 "복지급여"라는 용어는 '입양아 양육보조금'으로 고치고, 입양아 양육 보조금 지급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할것.
예) ① 형제/ 자매/ 남매입양시
 ② 장애아 입양시

이상석 - 개정시안 34조에 '입양양육보조금'의 신청절차를 명시해야.

배태순 - 개정시안의 벌칙조항이 너무 약함. 벌칙조항이 강화되어 함 ⇒ 3년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 개정시안 40조 1항에 불법입양에 가담한 친부모, 양부모 및 알선자를 포함시킬 것. 기존의 1항은 2항으로.

이상석 - 개정시안 26조 '...업무정치를 명할수 있다'로 고칠것.

- 공청회에 대한 의견.

입양특례법 개정시안

입양특례법 개정시안의 구성

제1장 총 칙

- 제1조 목적
- 제2조 정의
- 제3조 책임

제2장 입양의 요건

- 제4조 양자될 자격
- 제5조 양친될 자격
- 제6조 기관입양
- 제7조 부부공동입양
- 제8조 입양의 동의

제3장 입양의 성립과 효력

- 제9조 입양의 효력발생
- 제10조 친생자 출생신고
- 제11조 양자의 성과 본
- 제12조 입양의 효력
- 제13조 입양취소청구의 소의 제한
- 제14조 알 권리의 인정
- 제15조 파양의 청구
- 제16조 파양

제4장 입양기관

- 제17조 입양기관
- 제18조 입양기관 종사자
- 제19조 입양기관의 의무
- 제20조 입양기관의 후견직무

제21조 무적아동의 취적

- 제22조 전원
- 제23조 국외입양
- 제24조 비용의 보조
- 제25조 감독
- 제26조 허가의 취소 등
- 제27조 청문

제5장 복지시책의 강구

- 제28조 발생 예방
- 제29조 국내입양의 활성화
- 제30조 전문 사회사업 서비스
- 제31조 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
- 제32조 법제상의 조치
- 제33조 복지급여의 신청
- 제34조 복지급여의 내용
- 제35조 비용의 부담
- 제36조 비용의 수납

제6장 보칙

- 제37조 준용규정
- 제38조 권한의 위임
- 제39조 벌칙

부 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요보호아동의 입양을 촉진하고 양자로 되는 자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보호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자의 입양을 촉진하고 양자로 되는 자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요보호아동”이라 함은 아동이 그 보호자로부터 유실, 유기 또는 이탈된 경우, 그리고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기타의 경우에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아동을 말한다.
3. “입양아동”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4. “입양가정”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양자를 둔 가정을 말한다.
5. “입양기관”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인가받거나 지정되어 입양알선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입양전문기관”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인가받거나 지정되어 국내 및 국외입양 알선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입양지정기관”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인가받거나 지정되어 국내입양 알선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다.

8. “입양기관 종사자”라 함은 입양기관에 종사하며 입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책임) ① 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전하게 양육되어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태어난 가정에서의 건전 양육이 곤란할 아동에게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도록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입양아동의 건전양육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입양의 요건

제4조 (양자될 자격) ① 이 법에 의하여 양자가 될 자는 아동복지법에 의한 요보호아동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로서 관할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어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과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에 보호의뢰한 자

2. 부모가 입양을 동의(부모가 사망 기타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속의 동의)하거나 후견인이 입양을 동의하여 보호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의뢰한 자

3. 법원에 의하여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자의 자로

제2조 (양자될 자격) ① 이 법에 의하여 양자가 될 자는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과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에 있는 18세 미만의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로서 관할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어 보호의뢰한 자

2. 부모가 입양을 동의(부모가 사망 기타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속의 동의)하거나 후견인이 입양을 동의하여 보호의뢰한 자

3. 법원에 의하여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자의 자(子)로서 도지사가 보호의뢰한 자

4. 기타 부양의무자가 알려져 있지 아니한 자

서 시도지사가 보호시설에 보호의뢰한 자

4. 기타 부양의무자가 알려져 있지 아니한 자로서 시도지사가 보호시설에 보호의뢰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자가 될 자에는 호주나 호주의 직계비속 장남자를 포함한다.

제5조 (양친될 자격) 이 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자는 다음의 각호의 요건을 갖춘자어야 한다.

1. 양친될 자가 25세 이상일 것

2. 양친될 자와 양자될 자간의 연령차이가 20세 이상 45세 미만일 것

3. 양자를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4. 양자를 천업·고역 기타 인권유린 우려가 있는 직업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

5.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에 상응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6. 부부간의 사이가 화목하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할 것

7.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양친될 자의 본국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제6조 (기관입양) 이 법에 의하여 양친될 자가 제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입양하고자 할 때에는 입양기관에 입양알선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7조 (부부공동입양) ① 양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자가 될 자에는 호주나 호주의 직계비속 장남자를 포함한다.

제3조 (양친될 자격) 이 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1. 양친이 될 자는 본국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일 것

2. 양자를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3. 양자를 천업·고역 기타 인권유린 우려가 있는 직업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

4.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에 상응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될 자는 배우자가 있어야 한다.

② 입양을 할 때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제8조 (입양의 동의) ① 제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양자로 하고자 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부모가 사망 기타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속의 동의를, 부모나 다른 직계존속이 알려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제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양자로 하고자 할 때에는 보호의뢰시의 입양동의로써 입양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② 15세 이상인 자를 양자로 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양동의외에 당해 양자로 될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입양동의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4조 (입양의 동의) ① 제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양자로 하고자 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부모가 사망 기타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속의 동의를, 부모나 다른 직계존속이 알려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양자로 하고자 할 때에는 보호의뢰시의 입양동의로써 입양의 동의에 갈음할 수 있다.
 ② 15세 이상인 자를 양자로 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양동의외에 당해 양자로 될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입양동의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3장 입양의 성립과 효력

제9조 (입양의 효력발생) ① 이 법에 의한 입양은 입양기관의 장이 양친될 자의 본적지에 서류를 갖추어 양자될 자를 양친될 자의 친생자 또는 입양자로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1항의 신고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양자로 될 자가 제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제6조 (입양의 효력 발생)

- ① 양친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있어서의 입양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② 제1항의 신고는 양친이 양자로 될 자의 후견인과 함께 서면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양자로 될 자가 제2조 제1항의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양친될자의 가족상황에 관한 서류

3.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을 동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입양기관이 발행한 입양확인서

5. 양자될자의 호적등본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양친될자의 가정 상황에 관한 서류

3.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을 동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10조 (친생자 출생신고) ① 제9조에 의하여 양자될자를 양친될자의 친생자로 신고할 경우 새로운 출생신고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자의 성명, 본 및 성별

2. 자의 혼인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분

3. 출생의 생년일시 및 장소

4. 부모의 성명 및 본

5. 자가 입적할 가의 호주 의 성명 및 본적

6. 새로운 출생신고서 작성의 근거법 조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되는 출생증명서에는 양친될 부모의 성명 ~~및~~ 본을 부모의 성명 및 본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한 출생신고서에는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첨부되는 서류로 출생증명서를 갈음한다.

제11조 (양자의 성과 본) 이 법에 의하여 양자로 되는자는 양친이 원하는 때에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제7조 (양자의 성과 본) ① 이 법에 의하여 양자로 되는자는 양친이 원하는 때에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른 양자가 파양 또는 입양이 취소된 경우에는 본래의 성과 본을 따른다. 이 경우 그 양자이었던 자가 제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었던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입양의 효력) 이 법에 의하여 양자로 되는 자는 양친의 혼인증의 출생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13조 (입양취소청구의 소의 제한) 이 법에 의하여 입양되어 6월이 경과된 때에는 양자, 양친, 친부모 기타 관계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입양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약취 또는 유인에 의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었던 자가 양자로 된 때
2.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때

제14조 (알 권리의 인정) ① 이 법에 의하여 양자가 된 자가 성인이 되면 그는 그의 출신에 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이 법에 의하여 양자된 자가 성인이 되어 그의 출신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입양기관의 장은 필요한 자료와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5조 (파양의 청구) ① 이 법에 의하여 성립된 입양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파양을 청구할 수 없다.

1. 양부모의 학대 또는 유기
 2. 기타 양부모와 자녀 관계를 계속하기 힘든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양 청구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1. 양자이었던 자가 제4조

제5조 (입양취소청구의 소의 제한) 이 법에 의하여 입양되어 1년이 경과된 때에는 양자·양친·친부모·기타 관계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입양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약취 또는 유인에 의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었던 자가 양자로 된 때
2.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때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었던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입양으로 인하여 말소
된 양자의 원적 사본
3. 입양기관이 발행한 입
양사실확인서
4. 입양기관의 파양상담보
고서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사유가 있을 경우 양부모,
양자 또는 입양기관의 장이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 (파양)

- ① 가정법원에 의해 파양의
선고를 받은 입양아동에 대하
여 시·도지사는 입양기관의
장 및 기타 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아동복지법 제11조
및 제12조에 의한 보호조치를
즉시 취해야 한다.
- ② 이 법에 의하여 양친의 성
과 본을 따른 양자가 파양 또
는 입양이 취소된 경우에는
본래의 성과 본을 따른다.

제4장 입양기관

제17조 (입양기관) ① 국내
및 국외입양을 알선하는 입양
전문기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보건사회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
다.

② 국내입양만을 알선하는 입
양지정기관을 운영하고자 하
는 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
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시·도
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는 국내입양의 촉진
을 위해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제10조 (입양알선기관) ① 입양
알선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서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
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
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입양알선기관의 허가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③ 외국인은 입양알선기관의 장
이 될 수 없다.

아동복지시설을 입양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입양기관의 허가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외국인은 입양기관의 장이 될 수 없다.

⑥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대상국이나 당해국의 공인기관과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8조 (입양기관 종사자) ① 입양기관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종사자를 두어야 한다.

② 보건사회부장관은 입양기관 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 (입양기관의 의무) ①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알선을 행함에 있어서 그 양친될 자에 대하여 제5조 각호의 사실을 상세히 조사하여야 한다.

② 입양기관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입양기관의 장은 양친될 자에게 입양전에 아동양육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성립 후 6월간 양친자의 상호 적응 상태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입양 아동은 국적취득시까지로 한다.

④ 입양알선기관의 장이 입양대상국이나 당해국의 공인기관과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 (양친의 가정조사와 비밀유지) ① 입양알선기관의 장은 입양알선을 행함에 있어서 그 양친이 될 자에 대하여 제3조 각호의 사실을 상세히 조사하여야 한다.

② 입양알선기관의 장은 입양을 위하여 입양될 자의 성명·사진 또는 신분에 관한 사항을 광고할 수 없다.

③ 입양알선기관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입양기관의 장은 국외로 입양된 자를 위한 모국방문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20조 (입양기관의 후견직무)

- ①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을 알선하기 위하여 입양될 자를 인수한 때에는 그 인수한 날로부터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후견인으로서 직무를 행한다.
- ② 입양기관의 장은 제15조에 의한 파양청구소송이 제기된 날부터 후견인의 직무를 재개한다.

제21조 (무적아동의 취적) 입양기관의 장은 양자될 자를 호적이 없는 상태에서 인수한 때에는 그 자에 대한 취적 또는 일가창립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2조 (전원) ① 입양기관의 장은 제4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입양기관에 보호의뢰된 자의 입양알선이 불가능한 경우 사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의하여 보고된 아동을 보호시설에 보호의뢰하여야 한다.

제23조 (국외입양) ① 외국인이 제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양자로 할 경우 입양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당해 양자로 될 자의 해외이주허가를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제9조 제2항 각호의 서류

2. 양자로 될자가 제4조 제1항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되는 자인 경우에는

제12조 (입양알선기관의 장의 후견직무) 입양알선기관의 장은 입양을 알선하기 위하여 보호시설의 장으로부터 입양될 자를 인수한 때에는 그 인수한 날로부터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후견인으로서의 직무를 행한다.

제13조 (무적아동의 취적)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알선을 의뢰받은 입양알선기관의 장은 그 양자로 될 자가 무적자인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한 취적 또는 일가창립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제8조 (국내에서의 국외입양)

- ① 외국인이 국내에서 제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양자로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외국인은 후견인과 함께 양자로 될 자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입양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제6조 제2항 각호의 서류

부양의무자를 확인하기 위한 공고사실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양자로 될 자가 해외이주 허가를 받고 출국하여 당해국의 국적을 취득한때에는 입양 전문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법무부장관은 직권으로 그의 대한민국 국적을 제적할 것을 본적지 관할 가정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양자로 될 자가 제2조 제1항 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되는 자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를 확인하기 위한 공고사실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1990. 12. 31 삭제)

제9조 (외국에서의 국외입양)

① 외국인이 국외에서 제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양자로 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관한 입양알선업무를 행하는 기관에 그 알선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양알선업무를 행하는 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입양알선기관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 알선을 의뢰받은 입양알선기관의 장이 입양알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8조 제1항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당해 양자로 될 자의 해외이주허가를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양자로 될 자가 해외이주허가를 받고 출국하여 당해국의 국적을 취득한 때에는 입양알선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법무부장관은 직권으로 그의 대한민국 국적을 제적할 것을 본적지 관할 가정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 (비용의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양기관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25조 (감독) ①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양기관에 대하여 입양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입양에 관한 서류의 조사 또는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6조 (허가의 취소 등)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입양기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허가 및 지정을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제27조 (청문)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6조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즐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감독) ①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양알선기관에 대하여 그 입양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입양에 관한 서류의 조사 또는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5조 (허가의 취소 등) 보건사회부장관은 입양알선기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5장 복지시책의 강구

제28조 (발생 예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9조 (국내입양의 활성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국내의 다른 가정에서 건전 양육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0조 (전문 사회사업서비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 가정에 대하여 입양아동의 건전양육에 필요한 상담 등의 전문 사회사업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1조 (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택건설촉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입양가정에 일정의 비율이 우선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 (법제상의 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상 및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33조 (복지급여의 신청) ① 입양가정 또는 그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은 입양아동의 건전양육에 필요한 복지급여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급여를 신청하는 방법, 절차 및 이해관계인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 (복지급여의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급여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복지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생활보호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고 있을 때에는 그 범위안에서 이 법에 의한 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1. 아동양육비
2. 의료비
3. 아동교육지원비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

제35조 (비용의 부담)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건사회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담한다.

제36조 (비용의 수납)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친될 자로부터 입양알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납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37조 (준용규정) 입양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 (준용기준) 입양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38조 (권한의 위임)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9조 (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입양알선업무를 행한 자

2.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의 취소,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의 명령을 받고 사업을 계속한 자

②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 (벌칙) 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없이 제9조의 입양알선업무를 행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이하 생략)

제17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